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(고용노동부 소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의 제한을 완화하고,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대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간 수혜 수준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규모를 다양화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기제로 작용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(안 제46조제4항제1호)

-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100분의 80 이내에서 100분의 80, 90 이내로 확대

나. 기본재산 사용요건 및 사용범위 확대(안 제46조제4항제3호, 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)

-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

된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 또는 재난,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완화하고,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를 재난 또는 경영상 위기와 무관하게 100분의 20, 25, 30 범위 이내로 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5항부터 제7항까지”를 “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62조제2항제1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,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가. 100분의 80

나. 100분의 90

제46조제4항제3호 중 “300만원”을 “200만원”으로 하고, “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”을 “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”으로 하고,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

나.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

다.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

라. 기금법인은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위 나목 또

는 다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종전에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4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 대상) ① ~ ③ (생략)	제46조(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 대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또는 제7항의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.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,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단서 신설>	-----없다. 다만, 법 제62조제2항제1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,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

<신 설>

2. (생 략)

3.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

<신 설>

정되는 금액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가. 100분의 80

나. 100분의 90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200만원 -----

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 --

가.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

나.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

다.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

라. 기금법인은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위 나목 또

⑤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(제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,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)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

는 다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종전에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<삭 제>

다.

1.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
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
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사실이 있는 경우

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법」 제14조제1항 및 제4
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
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
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
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
우

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
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

다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
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

2.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
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
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
회가 협의·결정한 날이
속하는 달의 직전 달(이하

이 호에서 “기준달”이라
한다) 말일의 해당 사업 재
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
연도의 직전 연도(이하 이
호에서 “직전연도”라 한
다)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
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
가한 경우

나.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
연도의 월평균 생산량, 기
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
생산량 또는 직전연도의
같은 달 생산량 중 어느 하
나에 비하여 100분의 15
이상 감소한 경우

다.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
연도의 월평균 매출액, 기
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
매출액 또는 직전연도의
같은 달 매출액 중 어느 하
나에 비하여 100분의 15
이상 감소한 경우

라.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
직전연도의 월평균 원자재
가격, 기준달 직전 3개월의
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

직전연도의 같은 달 원자
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
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
승한 경우

⑥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
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
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
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
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복지기
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
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때
에는 그 금액에서 제4항제3호에
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
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
에 따라 5년이 되는 날까지 사
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
수 있다.

⑦·⑧ (생략)

<삭 제>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
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559